

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배송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3672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9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학교급식 공급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김포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김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·배송 운영 사무
- 나. 위탁기간: 2026. 1 ~ 2028. 12.(3년)
- 다. 수탁자: 2개 업체
- 라. 위탁방법: 민간위탁
- 마. 위탁시설: 양촌읍 금포로 1697 / 학교급식지원센터 1층(1,446㎡)
- 바. 위탁내용: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·배송 운영 전반
- 사. 위탁사무
 -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
 - 관내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및 관련 민원 관리(수발주 및 컴플레인 관리)
 - 식재료 유통·배송 관리
 - 그 밖에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- 아. 선정방법: 공개경쟁모집(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학교급식법」 제5조(학교급식위원회 등)
- 나. 「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다. 「김포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의회 동의) 등

4. 예산수반사항

- 가. 예정금액 : 136,285천원(2026년)
- 나. 비용추계

(단위: 천원)

구 분	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계
총 소요액		136,285	210,103	214,413	220,728	223,160	1,004,689
민간위탁금	인건비	115,800	178,299	183,649	189,158	194,833	861,739
	시설운영비	12,085	11,604	19,064	19,570	20,127	82,450
	자산취득비	8,400	20,200	11,700	12,000	8,200	60,500

*자산취득비 '26년(전동지게차)/' 27년(전동지게차, 롤테이너)/ '28~' 30(롤테이너)

소관 실·과·소		농업정책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농업정책과장 장 오 규
	팀 장 직위·성명	공공급식센터팀장 양 성 지
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오 새 림(☎4288)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「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제1항 및 2항
- 「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제2항 및 3항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

다.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(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)

- 해당없음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인건비, 시설운영비, 자산취득비 반영(시비 100%)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계	
총 소요액	136,285	210,103	214,413	220,728	223,160	1,004,689	
민간위탁금	인건비	115,800	178,299	183,649	189,158	194,833	861,739
	시설운영비	12,085	11,604	19,064	19,570	20,127	82,450
	자산취득비	8,400	20,200	11,700	12,000	8,200	60,500

※ 비용추계는 변경 가능 있음.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

- 예산법무과 협의필

3.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

- 해당없음

4. 작성자 :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장 장오규 팀장 양성지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연도	2차연도	3차연도	4차연도	5차연도	계
세 입						
세 출	136,285	210,103	214,413	220,728	223,160	1,004,689
민간위탁금	136,285	210,103	214,413	220,728	223,160	1,004,689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136,285	210,103	214,413	220,728	1,004,689
	지방세수입	136,285	210,103	214,413	220,728	1,004,689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그 밖의 사항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학교급식법

- 제5조(학교급식위원회 등) ④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8조(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, 공급관리, 식생활교육, 전통 음식문화 계승·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
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2.14.>
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3. 경제적 효율성
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③ 삭제 <2020.2.14.>

③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 [제4항에서 이동 <2020.2.14.>]